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62,757,084	28,882,713
일반회계	887,312,535	26,619,376
특별회계	75,444,549	2,263,336
공기업특별회계	39,511,667	1,185,35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068,581	662,05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443,086	523,293
기타특별회계	35,932,882	1,077,9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677,080	260,31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05,998	90,180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021,770	60,653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485,011	14,550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5,682,775	170,483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2,650,897	79,527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3,690,900	110,727
도시개발특별회계	13,291	39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769,821	53,095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18,409	552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7,346,323	220,39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70,607	17,11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92,74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9,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